

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(정준호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9186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6. 11.

발 의 자 : 정준호 · 최혁진 · 조계원
이연희 · 임미애 · 임호선
채현일 · 문진석 · 한준호
복기왕 · 안태준 · 양부남
이건태 · 김준혁 · 염태영
강준현 · 박용갑 · 이재정
손명수 의원(19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근로자의 모집 · 채용 · 임금 · 교육
훈련 · 승진 · 퇴직 등 고용 전반에 걸쳐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노
력할 것을 책무로 규정하고 있음.

그러나 세계경제포럼에서 발표한 2025년 성격차 지수(Gender Gap
Index)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48개국 중 101위로 하위권에 머물고 있
음. 또한 고용노동부의 고용노동백서에 따르면 2023년 여성관리자 비
율이 22.11%에 그치는 등 직장 내에서 여성에 대한 유 · 무형적인 차
별로 인하여 여성이 불이익을 받는 이른바 “유리천장(glass ceiling)”
현상이 지속되고 있음.

이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로 피해를 입은 근

로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법률상담 및 심리상담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장 내 양성평등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려는 것임(안 제24조제7항 신설).

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양성평등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4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⑦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모집·채용·임금·교육훈련·승진·퇴직 등에서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법률상담 및 심리상담을 제공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4조(경제활동 참여) ① ~ ⑥ (생 략) <u><신 설></u>	제24조(경제활동 참여) ① ~ ⑥ (현행과 같음) <u>⑦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모집 ·</u> <u>채용 · 임금 · 교육훈련 · 승진 ·</u> <u>퇴직 등에서 성별을 이유로 한</u> <u>차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</u> <u>람에게 법률상담 및 심리상담</u> <u>을 제공할 수 있다.</u>